

의안번호	2206845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5. 1. 13.
추 계 번 호	24B620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65억 5,000만원, 2030년 925억 2,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176억 8,400만원(연평균 835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총 2,923억 7,900만원 (연평균 584억 7,600만원)
 - (지방비) 5년간 총 1,253억 500만원 (연평균 250억 6,1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안 제8조제4항) -영농영어정착지원 금 지급기간 확대	영농정착 지원금	55,200	81,600	90,000	90,000	90,000	406,800	81,360
	영어정착 지원금	1,350	1,974	2,520	2,520	2,520	10,884	2,177
	합계	56,550	83,574	92,520	92,520	92,520	417,684	83,537
	국비 (70%)	39,585	58,502	64,764	64,764	64,764	292,379	58,476
	지방비 (30%)	16,965	25,072	27,756	27,756	27,756	125,305	25,061

주: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인원, 지급단가,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지급중단 등 변동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4항(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8조제4항(후계농어업 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영농영어정착지원금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영농·영어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 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급중
-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
 - － 1년차 110만원(12개월)/ 2년차 100만원(12개월)/ 3년차 90만원(12개월)
 - ※ (분담률)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대상)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자
 -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
 - (의무사항 준수) 의무교육 과정 이수, 재해보험 가입, 지원금 지급기간 만료의 영농기간 및 수산업경영기간 유지 의무 등

- ※ [참고자료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참고자료 2]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
 [참고자료 3]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및 영어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계획 참고

[표 2] 청년 영농·영어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지원율	주요내용	2023	2024	2025
농림 축산 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 (1120-300)			55,106	95,724	113,662
	- 영농정착지원금	보조 70%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용도를 위한 예산 지원	52,458	83,370	101,545
	- 선발운영비	보조 50%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발에 소요되는 비용(서면, 면접 평가 등) 지원	1,125	1,000	900
	- 사후관리홍보	보조 100%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정책 등을 홍보하고,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등 지원	1,523	1,370	1,233
	- 청년창업농장학금	보조 100%	졸업 후 농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우수 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	—	9,917	9,917
	- 2030자문단운영	직접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 등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	—	67	67
해양 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3347-363)			1,926	2,527	6,074
	- 청년어업인정착지원	보조 70%	청년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	1,890	2,491	3,038
	- 사업운영 및 평가	보조 50%	지자체대상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운영 평가를 위해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36	36	36
	- 청년바다마을 조성	보조 50%	만 40세 미만 귀어 청년, 신혼부부 및 가구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어업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	3,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안 제8조제4항)

□ 개정안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본 추계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 (지급기간) 현행 3년 → 개정안 5년

- 현행 지급기간(3년) 종료 후 추가로 2년간(4년차 및 5년차)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최소 기간인 5년으로 가정

○ (연간 지급인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예산 편성인원 및 목표인원을 참고하여 4~5년차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인원 가정

- 이때, 전년도 지급인원이 의무사항 미준수 등으로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음연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4~5년차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인원 가정: 2026~2030년

(단위: 명)

	연차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인원	1년차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2년차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년차	2,000	4,000	5,000	5,000	5,000	5,000	5,000
	4년차	—	—	4,000	5,000	5,000	5,000	5,000
	5년차	—	—	2,000	4,000	5,000	5,000	5,000
영어정착지원금 지급인원	1년차	140	140	140	140	140	140	140
	2년차	75	75	140	140	140	140	140
	3년차	75	75	140	140	140	140	140
	4년차	—	—	75	140	140	140	140
	5년차	—	—	75	75	140	140	1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1인당 월 지급단가) 4년차 80만원, 5년차 70만원으로 가정
 - 현행 지급단가는 1년차 11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10만원씩 차감되므로, 4년차와 5년차에도 동일한 차감 기준 적용
 - * (현행 지급단가)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이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분담률) 국비 70%, 지방비 30% (현행 분담률 적용)
 - 이때, 분담률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176억 8,4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총 2,923억 7,900만원
- (지방비) 5년간 총 1,253억 500만원

[표 4]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1인당 월 지원금 (A, 백만원/명·월)	4년차(A1)		0.8	0.8	0.8	0.8	0.8	—
	5년차(A2)		0.7	0.7	0.7	0.7	0.7	—
지급개월(B, 월)			12	12	12	12	12	—
지급인원 (C, 명)	영농	4년차(C1)	4,000	5,000	5,000	5,000	5,000	—
		5년차(C2)	2,000	4,000	5,000	5,000	5,000	—
	영어	4년차(C3)	75	140	140	140	140	—
		5년차(C4)	75	75	140	140	140	—
영농영어 정착지원금 (D, 백만원)	영농	4년차(D1)	38,400	48,000	48,000	48,000	48,000	230,400
		5년차(D2)	16,800	33,600	42,000	42,000	42,000	176,400
		소계(D1+D2)	55,200	81,600	90,000	90,000	90,000	406,800
	영어	4년차(D3)	720	1,344	1,344	1,344	1,344	6,096
		5년차(D4)	630	630	1,176	1,176	1,176	4,788
		소계(D3+D4)	1,350	1,974	2,520	2,520	2,520	10,884
	합계 (D = ∑(A×B×C _i) = D ₁ +D ₂ +D ₃ +D ₄)		56,550	83,574	92,520	92,520	92,520	417,684
		국비(D×70%)	39,585	58,502	64,764	64,764	64,764	292,379
		지방비(D×30%)	16,965	25,072	27,756	27,756	27,756	125,305

- 주: 1. 지급기간은 2년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현행 3년 → 개정안 5년)
 2. 1인당 월 지급단가는 4년차 80만원, 5년차 7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지급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예산 편성인원 및 목표인원 참고
 4. 분담률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가정(현행 분담률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인원, 지급단가,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지급중단 등 변동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사업목적)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자금 지원 및 농지·자금·교육 지원 등을 연계하여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농업 고령화 완화
- (관련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업인 우대)
- (지원내용)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 증(95%),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 ('18~'22) 월 최대 100만원 → ('23) 월 최대 110만원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급
 - *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직불카드 발급)

< 지원기간 및 금액 >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2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	2,280(24)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 (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창업농
 - * 사업선정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함
- (예산/인원)
 - ('18) 128억원/1,600명(누적) → ('19) 213/3,200 → ('20) 314/4,800 → ('21) 335/6,600 → ('22) 389/8,600 → ('23) 551/12,600 → ('24) 957/17,600

[참고자료 2]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사업내용

- **(목적)**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청년 수산업 경영인
- **(지원규모)**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 지원
 - * (어업경영 기준)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 (사용용도)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시행주체)** 국비 70%(농특), 지방비 30% / 지자체

□ 참고사항

- **(사업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선발(시·군)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이행점검(시·군) → 성과평가(어촌어항공단)
- 연차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정부안)
대상	귀어인 (맨손어업 제외)	어업인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어업인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수산업경영인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수산업경영인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지급조건	3년차까지 월 100만원 (3년차는 조건 불리지역 한정)	3년차까지 차등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3년차까지 차등 지원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지원인원 (명)	100	169	208	206	225	227	290	355
예산 (백만원)	604	1,474		1,560	1,712	1,926	2,527	3,074

[참고자료 3]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및 영어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계획: 2021~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및 영어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계획: 2021~202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지급연차	지급인원 및 지급총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영농정착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	1년차 (월 110만원)	지급인원(명)	2,812	3,099	4,240	5,280	5,000
		지급총액(백만원)	24,567	26,534	37,962	43,081	49,500
		－ 국비(70%)	17,197	18,574	26,574	30,156	34,650
		－ 지방비(30%)	7,370	7,960	11,389	12,924	14,850
	2년차 (월 100만원)	지급인원(명)	1,420	1,480	1,963	2,711	5,000
		지급총액(백만원)	14,032	14,478	20,715	26,966	60,000
		－ 국비(70%)	9,822	10,135	14,500	18,877	42,000
		－ 지방비(30%)	4,210	4,344	6,214	8,090	18,000
	3년차 (월 90만원)	지급인원(명)	1,419	1,537	1,620	1,936	4,000
		지급총액(백만원)	6,323	7,156	9,607	10,247	43,200
		－ 국비(70%)	4,426	5,009	6,725	7,173	30,240
		－ 지방비(30%)	1,897	2,147	2,882	3,074	12,960
	합 계	지급인원(명)	5,651	6,116	7,823	9,927	14,000
		지급총액(백만원)	44,494	48,360	68,160	80,294	152,700
		－ 국비(70%)	31,146	33,852	47,712	56,206	106,890
		－ 지방비(30%)	13,348	14,508	20,448	24,088	45,810

구분	지급연차	지급인원 및 지급총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영어정착지원금 (해양수산부)	1년차 (월 110만원)	지급인원(명)	61	62	66	111	140
		지급총액(백만원)	732	744	871	1,465	1,848
		－ 국비(70%)	512	521	610	1,026	1,294
		－ 지방비(30%)	220	223	261	439	554
	2년차 (월 100만원)	지급인원(명)	85	89	74	90	140
		지급총액(백만원)	918	961	861	1,048	1,630
		－ 국비(70%)	643	673	621	756	1,176
		－ 지방비(30%)	275	288	240	292	454
	3년차 (월 90만원)	지급인원(명)	60	74	87	89	75
		지급총액(백만원)	576	710	940	904	761
		－ 국비(70%)	403	497	658	673	567
		－ 지방비(30%)	173	213	292	231	194
	합 계	지급인원(명)	206	225	227	290	355
		지급총액(백만원)	2,226	2,416	2,672	3,416	4,239
		－ 국비(70%)	1,558	1,691	1,889	2,454	3,037
		－ 지방비(30%)	668	725	783	692	1,202

주: 1. 월 지급단가 변경

－ (2022년까지)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2023년부터)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2. 분담률 국비 70%, 지방비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4] 청년농어업인 유입·정착 사업 지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유입·정착 사업 지원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주 요 내 용
	예산	예산	예산	
◇ 합 계	1,067,123	1,504,413	1,432,179	
I 청년농업인 유입	19,319	19,719	20,119	
영농아카데미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283	5,683	6,083	·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 여건(커리큘럼, 실습장 등) 조성 등 지원 (영농창업특성화대학 7개교) * 회계이관(농특회계→고특회계)으로 세부사업 신설 이관(농업농촌교육훈련→영농아카데미)(‘24~)
영농아카데미 (농업계대학지원)	4,489	4,489	4,489	· 농업계 대학생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진로탐색, 취·창업 동아리, 국외연수, 산학협력 지원 및 실습장 조성 지원 * 회계이관(농특회계→고특회계)으로 세부사업 신설 이관(농업농촌교육훈련→영농아카데미)(‘24~)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영농기술교육)	8,000	8,000	8,000	·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전문화·체계화된 장기 창업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창업 촉진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청년귀농 장기교육)	1,547	1,547	1,547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형 실습 교육 지원
II 초기 정착단계	1,036,695	1,471,174	1,398,685	
① 경영지원	7,680	8,960	9,02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480	360	420	· 심층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 상담 지원하여 청년농의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투자 유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농장학금)	7,200	8,600	8,600	· 청년층의 농업·농촌분야 진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이관(‘24~)
② 기술(교육)지원	3,230	4,160	3,92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청년·후계농업인 교육지원)	3,230	4,160	3,920	·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에게 맞춤형 영농경영 및 기술교육 등 지원
③ 생계·정착지원	904,821	1,352,184	1,257,90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06	95,724	113,662	· 농촌 인구 감소 및 농업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주 요 내 용
	예산	예산	예산	
맞춤형농지지원	844,915	1,241,260	1,113,440	· 고령·은퇴·직업전환·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영농경력·규모·연령 등에 따라 청년농·귀농·일반농 등에게 맞춤형으로 농지 지원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4,800	15,200	30,800	· 귀농·귀촌 청년층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 및 공동육아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동 복합·설치
④ 장비·시설지원	69,601	37,000	40,70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경영실습임대농장)	5,101	—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형·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통합 운영, 사업이관
임대형 스마트팜	64,500	37,000	40,700	·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 창업 및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임대 온실을 조성하여 적정 임대료로 재배·경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⑤ 용자지원	51,363	68,870	87,14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 (이자보전)	51,363	68,870	87,143	·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예정자 포함)의 후계농업인에게 영농기반(농지·시설 등)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용자) * 최대5억원, 연리1.5%, 5년거치 20년 분할 상환
III 정착 후	11,109	13,520	13,375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2040스텝업기술교육)	811	1,081	—	· 중급수준의 청년농을 고급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품목별 문제해결형 기술교육 지원 * 25년부터 성장농 단계 교육 통합운영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내역사업명 : 농업농촌교육훈련)
우수후계농업경영인지원 (이자보전)	10,298	13,520	13,375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중 영농 경영 우수 농업인에게 영농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용자) * 최대2억원, 연리1.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유입·정착 사업 지원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주 요 내 용
	예산	예산	예산	
◇ 합 계	36,528	44,386	46,958	
I 청년어업인 유입	12,912	8,108	7,122	
수산업창업투자지원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5,250	5,250	5,250	· 수산분야 창업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육성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계고교특성화)	2,651	2,776	2,776	·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해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승선실습, 현장실습훈련, 실습장비 등 지원 (9개교)
귀어귀촌활성화지원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귀어인의 집, 귀어학교 개설 등)	5,011	2,723	1,737	·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정보제공,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통해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0	132	132	·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의 장학금 지급
II 초기 정착단계	22,881	34,777	37,859	
① 경영지원	3,000	2,000	2,000	
수산전문인력 양성(R&D)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센터, 스마트수산양식 연구센터, 미래수산식품연구센터)	3,000	2,000	2,000	·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친환경 스마트 양식기술, 미래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영역과 수산분야 소양을 겸비한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② 기술(교육)지원	493	493	493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해양수산인경영기술교육)	117	117	117	·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경영관리 전문지식·기술·정보의 습득 및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어촌 현안문제 해소 도모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업경영인교육)	226	226	226	·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어기반 조성 자금 및 전문 교육·훈련 지원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창업어가멘토링)	150	150	150	· 수산업 분야 신규 창업어가 및 귀어민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
③ 생계·정착지원	2,906	3,647	7,194	
귀어귀촌활성화지원 (귀어학교 교육비 지원)	980	1,120	1,120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및 고령화 해소
청년어촌정착지원	1,926	2,527	6,074	· 청년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1백만원 정착금 지원을 통해 어촌 고령화 해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주 요 내 용
	예산	예산	예산	
④ 장비·시설지원	450	1,125	1,125	
어선청년임대	450	1,125	1,125	· 청년에게 어선을 임대해주고, 임대비 일부(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 * 어선 임대차 계약 총 18명 지원('22년 6명, '23년 12명)
⑤ 용자지원	16,032	27,512	27,047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업인후계자/ 이차보전)	9,741	16,697	15,418	· 어업인후계자 선정자의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 비용 지원(용자) * 최대5억원, 연리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20년 균분 상환 ** 연도별 평균잔액의 차지비중으로 예산을 나눈 수치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이차보전)	6,291	10,815	11,629	· 귀어귀촌을 희망자에게 귀어 창업과 주택구입 대출(용자)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0.75억원, 연 1.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Ⅲ 정착 후	735	1,501	1,977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수산경영대학과정)	340	340	340	· 수산계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화된 어업인 교육과정 운영하여 수산벤처 인재 및 전문경영인 양성(8개대학)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우수경영인 / 이차보전)	395	1,161	1,637	· 우수경영인 선정자의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비용 지원(용자) * 2억원, 연리1%,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연도별 평균잔액의 차지비중으로 예산을 나눈 추정치